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문위원 노형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김 기 창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1년 5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3. 제안이유

주5일 근무 확대에 따른 관광 수요 증가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치유, 산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령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도민 우선 예약제를 확대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도민 우선 예약제 확대 운영(안 제11조)

- 현행 20% → 개정안 40%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정비 등

(안 제3조, 제4조,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1조)

다. 별표 1, 별표 2 구분의 “산림휴양관”을 “무궁화관”으로 명칭 변경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관광 수요 증가와 산림치유,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령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도민 우선 예약제를 확대 운영하

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관광 수요 증가와 산림치유,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령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도민 우선 예약제를 확대 운영하고, 제명 띄어쓰기, 용어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3조제2호 및 제3호 중 “전일(前日)”을 각각 “전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수하는”을 “받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국·공·사립”을 “국립·공립·사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제4조”를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제4조”로 조문을 정비함.
- 제4조 중 “충청북도”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제6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제9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조문을 정비함.
- 제11조제2항 중 “2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납입하거”를 “납부하거”로, “성립된”을 “이루어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용일로”를 “사용일”로 등 도민 우선 예약제 확대 운영 및 조문 정비사항을 반영함.
-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제13조제2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할”을 “않을”로 조문을 정비함.

- 별표 1 기호(□) 구분의 산림휴양관란 “산림휴양관” 및 별표 2 구분의 “산림휴양관”을 “무궁화관”으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1. 5.20.~‘21. 5.26.)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주5일 근무 확대에 의한 관광 수요 증가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숙박시설의 도민 우선 예약제를 확대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